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2조(시행)에 의거하여 정선  
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 제 160 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별표 제5호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복무태도·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단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8조 제목을 “채용 절차”에서 “결원시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제1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단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2016년 12월 29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